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60
----------	-----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02.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정릉동 966-1), 4층
- 규 모 : 연면적 235.38㎡ (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 석관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9
- 규 모 : 연면적 333.89㎡ (지상1층/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활동사업 운영

3)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동선동3가 130-3)
- 규 모 : 연면적 283.86㎡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라.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의결

바. 기존 위탁현황 위탁 현황

시설명	위탁법인	위탁기간	종사지수	소요예산 (‘24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대표 : 정성현)	2025.3.1. ~ 2028.2.28	11명	712,215천원 (국 103,386천원, 시 220,540천원, 구 388,289천원)
석관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분소)			5명	181,099천원 (국 66,711천원, 시 66,711천원, 구 47,677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7명	397,580천원 (국 154,716천원, 시 154,716천원, 구 88,148천원)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